

第256回國會  
(定期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2 號

國會事務處

2005年11月16日(水) 午後 2時

## 議事日程

1.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
2.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
3.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
4. 국가청렴위원회위원(박인제) 추천안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學校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9. 初·中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
10.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13.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僱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1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都市鐵道法 일부개정법률안
23. 索道·軌道法 일부개정법률안
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5.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6.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7.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

## 附議된案件

- |                                    |   |
|------------------------------------|---|
|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           | 2 |
| 1.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 .....            | 2 |
| 2.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 .....            | 2 |
| 3.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 .....            | 3 |
| 4. 국가청렴위원회위원(박인제) 추천안(의장 제의) ..... | 3 |
|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9 |

6.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
7.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9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0
8. 學校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한광원·김부겸·구논회·최순영·노현송·이미경·최규식·조배숙·지병문·임종인·신기남 의원 발의) .....	11
9. 初·中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김홍일·유기홍·지병문·김효석·김성곤·최재성·백원우·김태홍·구논회·조배숙·강기정·이인영·신기남·유시민·이은영·배기선·우원식·박찬석·이경숙·박찬숙·최순영 의원 발의) .....	11
10.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2
11.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2
12.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정형근·최인기·정화원·김선미·이인제·안명옥·이강두·강길부·최경환·문병호·이낙연·김부겸·김종인·이상배·김춘진·권오을·이석현·권철현·고경화·박재완 의원 발의) .....	13
13.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3
14.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1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6
17.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6
18.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발의)(조경태 의원 외 143인 발의) .....	16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7
20.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7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7
22. 都市鐵道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배일도·김성곤·노현송·김덕규·허천·정봉주·홍창선·안경률·이근식·이상경·조일현·구논회·노웅래·정성호·강길부·최인기·김태홍·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	19
23. 索道·軌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정부 제출) .....	19
25.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한국방송공사 제출) .....	20
26.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	20
27.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	21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2
o 5분자유발언 .....	22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 각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및 전경·의경 대원들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각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

1.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
2.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

### 3.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

#### 4. 국가청렴위원회위원(박인제) 추천안(의장 제의)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청렴위원회위원(박인제) 추천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은 대법관에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중 지난 9월 20일 은진수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된 위원 1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종전의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박인제의 재산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지난 11월 14일 및 15일자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회의 자료의 기타 배부 자료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김황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김황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우윤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김황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윤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11월 9일, 14일, 15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 답변을 실시한 다음, 제2차 청문회에서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5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대법원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였으며, 제3차 청문회에서는 다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하는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황식 후보자에 대하여는 일부 공안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일부 위원 및 참고인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김황식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 답변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황식 후보자는 3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 및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가치관 및 성향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재판을 담당했던 남매간첩단 사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등 공안사건 및 종교재단 사립학교 관련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 볼 때 후보자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일부 청문위원 및 참고인으로부터 제기되었던바,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으로 그 성향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후보자의 성향은 오히려 중도적 견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입장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문제에 대하여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그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 상고부와 업무를 배분하는 방안 등이 우리 현실에는 필요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되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법조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퇴직 법관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평생 법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그와 아울러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과 법조계의 인식변화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야기하는 국가 우수인력의 비효율적 배분 및 대학 교육의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학부 전공자를 흡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하되, 그 정원은 엄격한 인가주의를 통한 합리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는 국가의 헌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반국가 단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은 필요하나 남북 관계 변화 등 시대 상황에 부응하도록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입법 방식으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폐지 후 대체입법, 형법 보완 등 어떤 형식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불구속 재판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하여는 우선 구속 요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혐의 대상 범죄의 중요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서 인권 보호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구속해야만 피의자가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국민의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하여는 과거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결에 대하여 그 적부를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재심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거나 법원 역사의 정리 차원에서 판결의 흐름이 시대별,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후보자 개인의 병역, 재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역 문제의 경우 후보자의 좌우 시력이 매우 달라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던 사실에 대하여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한 자녀의 유학 시절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된 점에 대하여도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개인적 도덕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공안사건 판결에 관계된 후보자의 성향 등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의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김황식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물론 법조계 내외로부터 신망이 높아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부 답변이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점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으며, 후보자 본인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개선 의견으로서 단기간에 과도한 서면질의로 인하여 후보자의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섭단체별 또는 위원별로 서면질의 항목 수를 제한하거나 중복되는 서면질의는 상호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김황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김황식)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다음은 대법관(박시환)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박시환)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이재웅**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박시환)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11월 10일,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다음, 제2차 청문회에서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5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대법원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3차 청문회에서는 다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하는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시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대하여는 19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해 소신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고,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며 스스로 법관직을 사퇴하는 등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옹호를 위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에만 머무르지 않고 2년여의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보유하는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전관예우의 관행에 편승, 일부 형사사건에서의 고액의 수입료, 군법무관으로

서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 의혹 등에 비추어 과연 개혁과 소수자 보호라는 평가와 일치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하여는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경력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줄이면서 상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재판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도 구두변론을 허용하며, 원심판결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판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운영과 상고심 재판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하였으며, 국민의 재판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심제 또는 참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관의 승진구조나 직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순치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하여는 과거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역사적 과오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이제는 법원이 자신의 상처를 뒤집어 보는 과정으로서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재심 사유나 과거의 재판을 다시 검토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넷째,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는 체제를 수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국민의 인권 침해에 오남용이 없도록 한다면 법 형식이 폐지든 보완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반체제 사상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필요도 있지만 체제에 구체적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법적 규제 전에 학문 또는 여론의 광장에서 그러한 주장들이 걸러지고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생명을 끊지 않고 무기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회 방위에 있어 차이가 없고, 피해자의 보복 감정을 위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사회 방위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밖에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하여 호주제 폐지 및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며, 다만 간통죄 폐지와 병행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 개인의 재산·병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인 및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및 병역 관계 등 개인적 도덕성 측면에는 앞서 지적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전판예우에 대한 개선 노력의 부족 등에 대하여 일부 참고인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시환 후보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신망을 갖추었고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후보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부 답변을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으며, 이에 후보자 본인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개선 의견으로서 단기간의 과도한 서면질의로 인하여 후보자의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별 또는 위원별로 서면질의 항목 수를 제한하거나 중복되는 서면질의는 상호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앞에 있는 단말기에 게시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법관(박시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박시환)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다음은 대법관(김지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서혜석 의원께서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김지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서혜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김지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11월 11일,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제2차 청문회에서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4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대법원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제3차 청문회에서는 다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하는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판사로서 20여 년간 재직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재판 업무 외에도 독일 연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만 대법관이 부담하는 많은 사건에 비추어 충분한 재판 경력이 필요한바, 후보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일반 민형사 재판 업무의 경력

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 및 가족 관계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가치관 및 성향이 진보적이거나 노동자 측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노동법 교과서를 쓰고 친노동자적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에 균형된 판결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력 법관제를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이고, 그러한 희망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제 사법부도 외압 차원이 아닌 국민적 요구나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특정 대학교 출신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대법원 구성으로 부적절하므로 후보자는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대법원의 가치와 철학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청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셋째, 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구속 재판 확대, 국선변호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여지를 없애고 중장기적으로 법조 일원화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전관 자체가 생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불과 53세로서 변호사 활동이 예상되고, 그러면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영리 활동을 통한 수익을 하는 것은 국민이 걱정하는 전관예우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법개혁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금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법관제도의 정착을 위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등 사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개선

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로스쿨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장학 제도 확충 등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법원이 앞으로 그런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법조 일원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력 법관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국민들의 보다 높은 수준의 재판 요구,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을 위해 동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며, 법조 경력자 임용 비율이 50%까지 확대된 시점에서 재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면적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넷째, 정치적·법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하여 전면 폐지, 폐지 후 형법 보완, 독소조항 개정 등 논란과 관련, 입법 형식보다는 담겨질 내용이 문제인데 동법의 기본 취지에서 오남용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폐지보다는 본래 의도했던 내용은 어떤 형식이든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간통죄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간통죄가 가정생활의 평화를 형법적 규율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여론 신장 등을 통해 이러한 필요성이 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간통죄의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문제에 대하여는 재심 사유에 대한 해석을 좀더 유연하게 해석하여 재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 주는 미래 지향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미래 지향적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 교원평가제와 관련,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학부모의 시각에서 동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능력·자질 및 신망을 갖추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참고인은 후보자를 적격자로 적극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원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부 답변이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점에 대해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으며, 후보자 본인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하여는 앞서 김황식, 박시환 후보 청문 심사 경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섭단체별 또는 위원별로 서면질의 항목 수를 제한하거나 중복되는 서면질의는 상호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법관(김지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김지형)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방금 심사 경과를 보고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 분리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4건의 투표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광재 의원, 정청래 의원, 한병도 의원, 서상기 의원, 이계진 의원, 최경환 의원, 이승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세 분의 대법관과 한 분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에 대한 동의 및 추천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 각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명패와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43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투표종료)

**○의장 김원기**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7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243표, 부 22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서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159표, 부 104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234표, 부 33표, 무효 5표로서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청렴위원회위원(박인제)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231표, 부 31표, 기권 4표, 무효 6표로서 국가청렴위원회위원(박인제)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시2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성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종합 정책질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동 추경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경안은 수정 의결하고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추가 지출요구 사항은 필요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4조 1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6000억 원 규모가 축소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도록 하여 3000억 원 감액 조치하고 각 부처의 불용 예산액 등 3000억 원 이상을 절감하여 국채 발행 규모를 그만큼 축소토록 하되 현 시점에서 세출예산 감액 내용을 부처별 및 개별사업별로 확정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대의견으로 절감액을 포괄액으로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책임지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소관 사업 중 병영시설 개선 사업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 469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2331억 원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미군기지 이전 부지 매입은 현재 77% 이상 진척되어 있으므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2331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소요분에서 해당액을 삭감토록 하면서 미군기지 이전 부지 매입 시 최대한 협의 매수를 통해 집행토록 부대의견으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중 생계·주거 급여 부족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증액 요청액 446억 원은 그 소요를 인정하여 이번 추경에 300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46억 원은 보건복지부 예산 절감액과 예비비로 자체 조달토록 하였고,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금년도 국채 발행 규모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포괄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되 부대의견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제도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거친 추경안의 규모는 순계 기준으로 당초 9146억 원에서 3000억원이 감액되어 6146억 원으로 축소되고, 세출은 5631억 원이 삭감, 2631억 원이 증액되어 총 300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규모는 05년 당초 예산 134조 3703억 원 대비 0.43% 증가한 134조 9459억 원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보고서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의결에 앞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3인, 기권 10인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7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1인, 기권 3인으로서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가 APEC 관련 행사에 참석 중인 관계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봉균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당초 예산상 계획된 세출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2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늘어나는 재정 지출도 중소·벤처 기업의 활성화 등 기금의 목적에 긴요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유념하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41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8항부터 제11항, 제13항 및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므로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상정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

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學校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한광원·김부겸·구논회·최순영·노현송·이미경·최규식·조배숙·지병문·임종인·신기남 의원 발의)

**9. 初·中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김홍일·유기홍·지병문·김효석·김성곤·최재성·백원우·김태홍·구논회·조배숙·강기정·이인영·신기남·유시민·이은영·배기선·우원식·박찬석·이경숙·박찬숙·최순영 의원 발의)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봉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학습 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납골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이전 법률이 간과하고 있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

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규정함에 있어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점 증가하는 학교 폭력과 학생 범죄를 예방, 선도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의 각급 학교 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 상담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예비 교원의 수가 부족한 처지로 인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學校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初·中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9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4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군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주호 의원, 권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규모의 부정행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 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선발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외부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가 위탁받은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에 있어 학년 제외의 제도와 수업 일수, 학사운영 등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과건근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 대상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영재교육 특례자로 선정하여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례자의 판별 등에 관한 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례자의 선정 결과에 대한 재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4인 중 찬성 219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정형근·최인기·정화원·김선미·이인제·안명옥·이강두·장길부·최경환·문병호·이낙연·김부겸·김종인·이상배·김춘진·권오을·이석현·권철현·고경화·박재완 의원 발의)

**13.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5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2항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3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형근**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정부는 공단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시설 구축을 위하여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재전대 형식으로 의료기관에 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금을 융자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차관선의 선택이나 융자 조건 등에 대해 전혀 선택의 여지없이 지원을 받았고 도입 당시의 환

율에 비하여 그동안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엔화의 경우 1980년 차관 도입 당시 환율은 100엔당 247원이었으나 현재는 1000원을 넘어 4배 이상 환율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연체금이 누적되었고 연체 의료기관이 차관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 국가채권관리법의 채권 상환 순서에 따라 연체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금만 계속하여 발생하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연체 의료기관이 도산·폐쇄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료권 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연체 의료기관에 대한 민사상의 강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오히려 국가 손실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연체 의료기관의 상환 의지를 제고시켜 국가 손실을 축소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한 환차손 보전 및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 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 확보 현황 및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의 상당 금액 이상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때에는 지역 보건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국가 채권의 징수 순위에 불구하고 차관 지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 제출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임신부 및 영·유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게 하는 등 임신부와 영·유아의 감염 예방 및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둘째,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신부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0인, 기권 10인으로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14.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5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열린우리당 서울노원을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

률안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 이유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 촉진과 기업의 인력 확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고용보험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아닌 실업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일률적으로 2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전 실업인정제도를 개별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 인정 주기를 1~4주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정 수급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의 연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보험이 보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되도록 정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자영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제교류협력, 자격검정사업 및 고용안정에 관한 투자는 사업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당 법률안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 및 일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기금의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이후 대기업 및 정규직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일용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 향운노조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마련이 긴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노동부에 촉구하였고, 아울러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일반회계 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맞추어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노동부장관에게 결정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이 없이 위임하는 것은 입법사항의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으로 그 결정 기준을 열거한 후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7.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8.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발의)(조경태 의원 외 143인 발의)

(16시1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경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의 장경

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편법적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 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도의 보완으로 위원회의 제척제도를 도입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시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매 대상 토지의 매수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하였고,

넷째,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확대를 위해 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 미만에서 20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둘째, 국민임대주택단지 이외의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에서도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였으며,

셋째,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기금 용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만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건설된 부도임대주택까지 매입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그동안 부과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을 2006년



부터 다시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고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장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찬성 180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3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7인, 기권 9인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0.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6시20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한선교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허위로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둘째, 법적 안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효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물 운송사업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벤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화물 운송 시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 화물운송 기준을 준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둘째, 자동차정비업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 간 유착 행위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불량 자동차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수 종사자 등이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부정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던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 적합성 있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둘째,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공급 조정에 의한 이용승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로 택시로 인한 범죄로부터 이용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한선교 의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제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都市鐵道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배일도·김성곤·노현송·김덕규·허천·정봉주·홍창선·안경률·이근식·이상경·조일현·구논희·노용래·정성호·강길부·최인기·김태홍·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23. 索道·軌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정부 제출)

(16시27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윤호중**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 시설에 역사 및 역무시설,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기술개발·시험 및 연구시설, 교육훈련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철도와 도시철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도시철도 시설의 해석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은 삭도·궤도사업의 허가요건 및 취소·정지처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삭도·궤도 사업을 위한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삭도·궤도사업자가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

나 삭도·궤도 사업의 허가를 기속행위로 하는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대하여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법안은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국민들이 소유한 토지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토지이용 규제의 신설을 제한하고 복잡다기한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일반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본문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되, 다만 부칙의 시행 시기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都市鐵道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索道·軌道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한국방송공사 제출)

**26.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16시3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우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의 공문서나 언론의 보도 방법에 있어서 한글을 주로 쓰기로 하고, 꼭 그 의미를 분명히 할 경우에만 괄호 치고 한자로 부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의 제목이 여전히 한자로 쓰여져 있는 법안들을 법률 명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실 때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 명칭은 반드시 한글로 명칭 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승인안은 4월 21일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요구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심사가 미루어졌습디나, 조속한 KBS 결산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2004년 총수입이 1조 2491억 원이고, 총비용이 1조 3128억 원으로 6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자 원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추궁하고, 적자 경영에 대한 많은 질책을 하였으며, 인력 구조의 개선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임금 체계로의 개편 등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KBS의 적자는 광고수입 추계 잘못과 그에 따른 경영 잘못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수신료 수입보다 광고수입의 비중이 높은 불안정적인 재원 구조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KBS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정 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격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접수하되, 적자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청소년·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등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확대 편성,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추구 등의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되 30%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재원의 확충을 통해 재원구조의 공영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요구하는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능방송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방송으로서의 품위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말·우리글 바로 쓰기 프로그램 및 독서 진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

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적극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의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6인 중 찬성 141인, 반대 45인, 기권 10인으로서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2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8인, 기권 4인으로서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6시39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일본

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존경하는 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최성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입니다.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제256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결의안은 일본 총리 및 일본 국회의원 등의 연례적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과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참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야기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지난 10월 17일 일본 총리에 이어 18일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이 참배한 것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전쟁 도발국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 총리 등의 연례적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군국주의의 부활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적 문제이며 일본총리가 주장하듯 단순한 일본 내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셋째, 일본 총리 등이 전쟁 도발국으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는 의지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진실한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더 이상의 참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넷째, 우리 정부가 일본 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

가 국제사회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 후에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익산을 출신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칫 제 발언이 제 지역구의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소아병적인 욕심으로 비쳐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에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특히 전북이 처음으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 결

과를 발표했기에 여기에 반발하는 것이 자칫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남, 광주·전남, 울산, 대구, 충북 등 이미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저희 전북과 같은 불공정과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선정 결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은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실 겁니다.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 서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로 인해 위축되는 지역경제는 남아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두운 패배의 식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지방에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전북 지역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 심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그 지역은 도청 소재지인 전주 만성동, 중동, 완주 이서 일대입니다.

입지 선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도청 소재지를 혁신도시로 선정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원래의 취지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자는 것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 현상은 작게는 도 단위의 도청 소재지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도청 소재지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청 소재지는 이미 우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내 사업의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지방에 배려되는 사업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장 동력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아니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킨다는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했습니다.

완주 이서는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가 아니라 이전 대상 기관이 신청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입지선정위원 20명 중에 10명이 이전

대상 기관이 추천한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정성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도지사가 선임한 10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6명이 전북대, 전주교대, 우석대 등 전주권 소재 대학의 교수로서 지역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교수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입지 선정 과정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도민을 우롱한 입지 선정 절차였습니다.

당초 신청도 안 했던 전주권 지역이 이전 대상 기관의 추천을 이유로 그것도 두 곳이나 최종 후보지가 되자 다른 지역은 들러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우려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곳은 대외적으로 완주 이서로 지칭이 되었지만 실제 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은 전주 만성동, 중동 등 전주시 일원이고 완주 이서는 시험포 지역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도민들에게 혁신도시가 전주시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감추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덕합니다.

넷째, 혁신도시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을 무시한 심사 결과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여부 등 토지확보의 용이성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 가능성을 중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당 부분이 과거 그린벨트 지역으로 80% 이상이 녹지 지역으로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히 전주시 도시계획상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사실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건교부는 전주시내에 혁신도시를 두겠다는 전북의 입지 선정 결과가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니까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북도는 전주시내권만 벗어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편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완주 이서는 사실 전주권입니다. 도민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이 지역도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전주시내의 혁신도시 입지를 전제로 평가한 결과는 혁신도시 위치가 바뀌면 모든 점수도 바뀔 것이니까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평가 결과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의 완화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도권 집중의 전철을 밟아 가는 도내의 1도시 집중의 폐해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소재지는 혁신도시가 아니라도 발전 가능성과 여건이 충분합니다.

기왕에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 국가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의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무력에 의한 것보다 인권 탄압, 대형 재난 등과 같은 문제들이 더욱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권 탄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을 마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나 반통일 냉전 세력인 양 몰아붙이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인권 문제라면 학생들의 두발 자유도 인권 문제라고 소리 높여 외친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과 법률을 운운하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강변하던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도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곤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 정부의 침묵은 잔혹한 범죄를 칭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겁한 그리고 아주 무책임한 침묵의 카르텔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6년 방송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그중 생명을 걸고 북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정낙현, 이웅평, 장인숙, 정성산, 김성민, 김용, 강철환, 안혁, 김만철, 여만철…… 수 없는 사람들.

60~70년대는 귀순용사로, 그 이후 탈북자, 자유이주민, 새터민 등 그들을 부르는 우리의 호칭의 변화만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한탄하며 처참한 북의 현실에 분노하곤 했습니다.

북에서 어떤 일을 했든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배고픔, 독재의 협박 속에서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남쪽에 와서는 탈출한 자신 때문에 북에 남겨진 가족들이 처형되었을 것이라는 죄의식에 시달리곤 합니다.

무엇이 이런 현실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무도한 정권이 우리의 동포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통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CNN의 북의 공개처형 장면 방송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어떤 이념과 사상, 전략적 고민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동족이기에 식량을 지원하고 화해의 대상이기에 약품을 지원하고 통일의 대상이기에 비료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정권을 더욱 견고한 세습 독재 체제로 만들어 주고 북한 동포들을 국제사회로부터 영구히 고립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로 국제사회가 나선 것입니다. 바로 대북 인권 결의안입니다.

2003년부터 3년 연속 인권 탄압을 중지하라는 북한에 대한 준엄한 결의가 UN인권위원회에 제

출되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 우리 정부는 계속 표결 불참, 기권으로 북한 인권 탄압에 외면하거나 침묵해 왔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힐난과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이 사상 최초로 유엔총회에 상정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곧 표결 처리될 것입니다.

정부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한나라당 결의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마저 봉쇄했습니다. 우리의 핏줄 몇백만 명이 기아와 탄압, 공개 처형으로 죽어가고 몇십만 명이 몽골, 중국, 베트남을 떠돌면서 밥 한 끼에 팔려 가는 비극을 통일을 위한, 민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면서 외면한다면 역사의 죄인 민족의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시간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때 국제사회는 군사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았습니. 올바른 역사 발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얻지 않았습니까?

세계 속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이제는 당당히 힘을 보태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박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여야는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47.1%를 차지하면서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와 국가의 균형 발전은 꼭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



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근거를 들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결정 당시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며 분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취지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올해 새롭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유에 따라 수도의 요소인 청와대와 국회 등 국정의 중추기관을 서울에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는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12부4처2청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능적 정책적 분산 배치에 해당할 뿐 결코 수도의 분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야말로 수도권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큰 차질을 줄 것이며 국가는 또다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더욱 멀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을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때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했다가 말을 바꿔 반대 투쟁을 하더니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정중하

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내용이 합헌적이므로 더이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이 여야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정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지 한정합헌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그동안에 보시다시피 탈북자들에 관한 보호 법률안과 또 납북자 지원 법률안, 국군포로 법률안, 또 이산가족 생사 확인 법률안, 북한 인권 법안…… 이렇게 법을 냈는데 상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결의안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냈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과 김동식목사송환 촉구결의안도 냈는데 도대체 심의도 안 되고 상정도 안 됩니다. 이번 유엔총회 북한 인권 참여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냈는데 또 상정이 안 되고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테이프는 북한의 회령 지역입니다.

회령에서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는, 저렇게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지금 어린이들까지 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잔인하게 처형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선전차입니다. 그리고 이 회령이 바로 북한 접경지역…… 어린이가 방금 뛰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문이 낭독도 안 되었는데 저기에 벌써 저렇게 사형대가 세워졌습니다, 빨간 선 안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 머리에 세 발을 쏘

고, 가슴에 세 발, 배에 세 발 이렇게 아홉 발의 총을 쏩니다. 그러면 머리의 골이 다 튀어 나오고 가슴이 다 터지고 창자가 다 튀어 나옵니다. 정말 끔찍해서 한번 이 처형 장면을 본 사람은 평생 가슴의 상처가 됩니다. 개를 죽여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도축장에서 죽이는데 사람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것입니다.

저 테이프는 몰래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우리 한국 방송에서 방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안 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송에서 저렇게 방영이 됩니다. 다시 저렇게 2명을 묶어 놓고 총을 쏩니다. 여기에 소리를 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것은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이 되어서 좀 흔들립니다.

처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총알을 세 번 쏘는데 머리에 세 발, 가슴에 세 발, 배에 세 발 이렇게 아홉 발을…… 사람 한 사람에게 아홉 발의 총을 쏘서 잔인하게 합니다. 저것 못 보겠다고 다 이렇게…… 애들이 집에 갑니다. 보시다시피 저것 전부 애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과 들에 나무 한 포기 없습니다. 저기는 전부 죄수들을 끌어들여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포 사회로 몰아가기 위해서 공개처형을 하고 수천 명이 지켜보고 일주일 내내 방영을 합니다.

처형이 끝나고 다 들어가는 중입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심합니다. 이게 올해 회령에서 삼일절에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3월 2일에 다시 처형…… 바로 회령시에 있는 유선동이라는 데입니다. 그다음날 또 한 명을 처형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탈북자를 도와 줬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산에 나무도 하나 없습니다. 저기에 재판장이 서서 읽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녀자를 유인해 가지고 탈북을 도와 줬다는 이유 때문에 조국을 반역했다 이래서 공개처형을 시킵니다.

저기 읽고 있는데 벌써 저 뒤에 다 처형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입니다. 처형대 세우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렇게 묶어 놓고 사수 세 명이 머리에 세 발, 가슴에 세 발, 배에 세 발을 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법에 없는…… 북한 형법을

찾아봐도 저렇게 사형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살 권리는 고사하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저렇게 미리 처형하기 전에 저 검은 천을 쳐놓고 머리를 돌로 쳐 가지고 실신시키고 재갈을 물리고 소리 못 지르게 해 놓고 저렇게 묶어 놓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먼저 실신시켜서 사형대에 묶습니다. 묶어 놓고 처형을, 총을 쏩니다. 저 앞에 군인들이 다가가서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방을 쏩니다. 적을 향하여 겨누라고 합니다. 처음에 쏘습니다. 바로 거꾸러져서 저렇게 풀썩 넘어 집니다. 산에는 나무나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쏩니다. 두 번째 또 세 발, 여섯 발 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이는데, 정말 저는 무엇보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저렇게 또 마대 같은 데에다 죽은 시체를 구겨 넣습니다. 저렇게 구겨 넣어 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들이 전부 어린 애들입니다. 걷는 모습이 여자애들입니다.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의원님들!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세계 인류의 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북한 인권 관련되는 법률과 결의안을 꼭 심의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희태 김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애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자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심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담양의 정용품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난 14일 농약을 마시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경북 성주 오추옥 여성 농민을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줄 압니다.

어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전국 농민 2만 여 명이 모여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와 근본적인 농업 희생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후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농민 간의 충돌로 100여 명이 넘는 농민들이 부상당하였고 이 중에는 무방비 상태의 노인과 여성 농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급차 앞에서 치료하던 여성들까지 방패로 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30여 명에 이르는 경찰들의 부상도 심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차가 불타는 등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유발된 근본 원인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쌀 비준안 처리 문제는 농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우리 국회의 가장 큰 정치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의 시청·군청·도청 앞에는 100만 석 가마에 이르는 쌀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되어 가는 물량이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농민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벼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민들의 절규를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국회가 지금 쌀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향후 10년, 즉 2015년부터 쌀 시장은 전면 개방되게 됩니다. 개방과 더불어 매년 283만 석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줘야 합니다. 이 양은 국내 쌀 소비량의 12.8%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우리 쌀 농업이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소비자 시판까지 허용되게 되어서 그 충격을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쌀 이외의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속된 문제 제기와 그리고 국민과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분석 내용조차 아직까지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쌀 관세화 유예를 지키기 위해 정

확히 무엇을 양보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의결까지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간에 밀려서 비준안을 졸속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계가 연내 처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자 협의 기구 구성과 12월 18일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를 대체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히 쌀 비준안이 처리되기도 전부터 현지에서는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으로 농가의 손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농민들이 바뀐 제도를 잘 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화는커녕 국회의사당 앞으로 평화 행진을 하는 농민들을 겹겹이 에워싸서 막았고 이에 분노하는 농민들을 향해서 닦치는 대로 때리고 짓밟고 진압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18일 부산에서, 21일에는 서울에서, 그리고 23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많은 국제적 협상을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국내 협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농업 통상학자의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서 피해 당사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들과 국내 협상을 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삼자 협의 기구를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농업 희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민들의 피타는 심정을 헤아리시어 정부와 농업계와의 극도의 불신과 갈등을 풀어 나가고 근본적인 농업 희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희태 현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일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했습니다. 한꺼번에 두 장이 넘어와서……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299명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예산·홍성 출신 한나라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밥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또한 국회 현관에서 오늘로 21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을 보셨습니까?

어제 국회 앞 농민 집회에서 터져 나온 농민들의 절규를 들어 보셨습니까? ‘농촌생활 정말 힘들다. 농사를 짓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대책 없는 쌀 개방 안 된다’며 죽기 전 유서를 남긴 전남 담양 정용품 농민의 자살과 경북 성주 여성 농민 오추옥 음독자살 기도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쌀 협상 국회 비준은 12월 18일 WTO 홍콩 각료회의 결과를 본 후 찬반을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서둘러서 강행을 하려 하십니까?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쌀 협상을 압박하고 마치 관세화가 진행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각료회의 후에 처리해도 국가의 신인도나 그리고 MMA 물량이 들어오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국 국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음독자살로 목숨을 끊고 전국 군청이나 농협 앞마당에 벼 가마를 쌓아 놓고 불태우며 온 농민이 절규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WTO 전문 어디에도 국회에 상정해서 논의 중인 협상안을 임의대로 관세화시킨다는 국제 규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전국이 쌀 문제로 아우성을 하고 있는 그리고 국회 앞에서까지 절규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DDA 협상 결과를 보고 찬반을 묻자는 것인데 왜 자동 관세화된다고 우리 국민과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부가 국제 통상 협상을 해 온 안을 국회가 거부할 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농촌·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논의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제 여건이 마련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 협상이 끝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진행의 결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히 되돌아봅시다. 농가당 빚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농약 값, 비료 값, 각종 농기계 값, 각종 농자재 값 그리고 씨앗 값을 비롯한 인건비, 전기료, 기름값 등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적게는 8.2%, 많게는 42.6% 이상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다 벼 수매 중단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농업정책자금이 일부 지원 중단되는 등 농촌은 이중고, 삼중고의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17만 원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12만 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되는 우리의 농촌 현실을 이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이 시간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과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대통령이 쌀 협상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도 없다고 하고 지침을 준 적도 없다고 하는 이런 협상 내용을 국회에서 책임지려면 그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농업정책을 중단하고 울부짖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쌀농업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자살하기 직전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2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비준을 처리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APEC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쌀 협상을 23일 후로 연기했다면 죽은 시체에 칼을 꽂는 처사하고 비겁한 정부 여당, 그리고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희태** 홍문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태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를 출신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와 열린 우리당 간의 당정협약에서 과주, 평택, 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기업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자원부는 3일 만인 지난 7일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12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1994년 수도권경비계획법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초지일관 추진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이 참여정부 들어 일사천리로 단 한 달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수도이전 특별법을 추진하다 위헌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행정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과도한 수도권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도권에 대기업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출범 2년 9개월 만에 중요한 국정목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그들의 지방 발전 정책을 지방 말살 정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개정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지방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방에 투자하려던 대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대거 몰릴 것이고 그나마 있던 대기업 공장들도 하나 둘씩 지방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지방경제는 서서히 말라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신호탄이라며 철회될 때까지 생존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지금 구미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절규를 넘어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 개정 작업에 대한 아우성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미는 올해만도 이미 300억 불 수출을 달성하고 국내 수출액의 11%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첨단 전자산업단지입니다. 구미가 직격탄을 맞아 대구·경북이 동반 몰락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난 2003년 LG필립스 LCD를 경기도 파주 지역에 빼앗겼다고 여기는 구미 시민들은 이번에는 정부로부터 LCD에 대한 신규투자 기회를 강탈당했다면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LG의 280여 개 협력 업체들은 껍데기만 남는 구미를 떠나 파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벌써 이전 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호남지역 8개 상공회의소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광주 첨단 대불산업단지를 비롯한 지방 산단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여야 정당 지도자들에게 방침 철회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충청권과 강원 및 심지어 제주도 상공인들도 막대한 재원을 동원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가 신규 분양은커녕 기 분양계약마저 해약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을 제발 백지화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쟁기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입니다.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성난 민심이 수도권과 정부를 향해 노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대기업을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지방 대 수도권의 대립이 동서 간 감정 대립보다 국가발전에 더 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경제를 죽이는 작업 대신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그나마 민심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철회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동 결의안이 산자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자위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김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회의장에서 후진타오 중

국 국가주석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4인)**

권영길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재원	나경원	노회찬	단병호
박계동	박근혜	박찬숙	심재철
엄호성	윤건영	이승희	이인제
이종구	이혜훈	임태희	정갑윤
진수희	최경환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9인)**

김기춘	김영숙	김정부	김태환
김형오	박성범	이재창	정화원
정희수			

(이혜훈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반대 의원 24인,  
기권 의원 9인임)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27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b>반대 의원(3인)</b>			
김재원	이종구	이혜훈	
<b>기권 의원(5인)</b>			
김기춘	김영선	정희수	진수희
황진하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1인)**

장기정	장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흥 문 표 흥 미 영  
 흥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애 실 정 화 원 조 성 태

**○學校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오 을  
 김 교 흥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흥 문 표 흥 미 영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9인)**

김 영 춘 김 원 응 김 현 미 노 회 찬  
 문 학 진 박 병 석 배 일 도 서 갑 원  
 현 애 자

**기권 의원(5인)**

강 성 종 김 형 주 신 계 룡 유 선 호  
 임 종 석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선택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춘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고홍길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222인, 기권 의원 없음)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4인)**

강 성 종      김 낙 순      선 병 렬      정 의 화

**기권 의원(1인)**

양 형 일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승 조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홍 문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10인)**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구 논 회      권 오 을      김 교 흥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강창일	김종인	노회찬	단병호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선병렬	이경숙	이영순	최순영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현애자	홍재형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b>기권 의원(4인)</b>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강성종	김선미	양형일	홍미영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정	강재섭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희태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반대 의원(20인)**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곽성문
김동철	김애실	김정부	박찬숙
배일도	서갑원	유시민	윤건영
이미경	이종구	이혜훈	장복심
정병국	최경환	최용규	한명숙

**기권 의원(10인)**

김용갑	김재경	김형오	김형주
박형준	심재철	양형일	우상호
이성권	정문헌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20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오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김재원	김재운	김재홍	김종인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김희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이재웅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반대 의원(6인)

김정권 김정부 윤건영 이종구  
 이해훈 최경환  
**기권 의원(5인)**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심재철  
 정문헌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창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창선 황우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  
 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구논회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반대 의원(3인)**

윤건영 이종구 임인배  
**기권 의원(13인)**  
 강성종 김정권 김정부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심재철 안민석  
 이해훈 정문헌 정화원 최경환  
 홍미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이재웅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안민석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진병헌	진재희	정갑윤	정덕구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진영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반대 의원(4인)**

김정부	안상수	윤건영	임인배
-----	-----	-----	-----

**기권 의원(9인)**

김영숙	김재경	김정권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정종복	정화원
최경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룰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찬숙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백원우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심재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택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항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필우	유필우	유승희	윤원호
이강래	이강래	이강래	이경숙
이근현	이근현	이근현	이근식
이목희	이목희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석현	이석현	이성권
이영순	이영순	이영순	이영호
이윤성	이윤성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오	이재오	이재웅
이혜훈	이혜훈	이혜훈	이호웅
임종석	임종석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경수	장경수	장복심
진재희	진재희	진재희	정문헌
정성호	정성호	정성호	정세균
정장선	정장선	정장선	정종복
정화원	정화원	정화원	정희수
조배숙	조배숙	조배숙	조성래
주승용	주승용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채수찬	채수찬	최경환
최규식	최규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연희	최연희	최용규
한명숙	한명숙	한명숙	한병도
허태열	허태열	허태열	홍문표
황우여	황우여	황우여	

**반대 의원(5인)**

김애실	김영선	안상수	윤건영
정갑윤			

**기권 의원(2인)**

김정부	이종구
-----	-----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영선	박재완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7인)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정부
박승환	서병수	안상수	엄호성
유기준	윤건영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임인배	정갑윤	정병국
허태열			

기권 의원(9인)

강성종	김병호	김용갑	김재경
박찬숙	심재철	임해규	정문헌
최경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영선
박재완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헌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정 병 국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구 논 회 권 오 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부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선 김 회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병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계 룬 신 기 남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회 룡  
 유기 준 유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김 재 경 우 제 항 이 용 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구 논 회 권 오 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동 철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영춘 김재원 김정부 김태년 김한길 김형주 노영민 단병호 문희상 박병석 박재완 배일도 서병수 신학용 안상수 염호성 우원식 유기준 유시민 윤건영 이강두 이광철 이명규 이상민 이승희 이용희 이인기 이종구 이호웅 임채정 장복심 전재희 정병국 정청래 제종길 조일현 진수희 최구성 최한광 허창선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혁규 김희선 노웅래 문병호 민상돈 박찬숙 백원우 서상기 손봉숙 심재택 염동연 우윤근 유기홍 유인태 윤두환 이강래 이목희 이시종 이원영 이인영 이주호 이화영 임태희 장윤석 정갑윤 정봉주 정형근 조경태 주성영 최규성 최순영 한명숙 황우  
 김우남 김재홍 김춘진 김태환 김현미 김희정 노현송 문학진 박기춘 박성범 박형준 변재일 서재관 신계륜 심재철 양승조 오영식 우제항 유선호 유정복 유원호 이경숙 이근식 이미경 이성구 이영순 이윤성 이재오 이진구 임인배 임해규 장향숙 정덕구 정성호 정장선 정화원 조배숙 주승용 최규식 최용규 한병도 홍문표

김재경  
 ○都市鐵道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영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남경필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신계륜 심재택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원희룡 유승희 유필우 이계진 이기우 이병석 이성권 이영호 이은영 이재웅 이혜훈 임중석 장경수 진병헌 정문헌 정세균 정중복 정희수 조성래 지병문 최경환 최병국 최철국 한선교 홍미영

기권 의원(1인)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정화원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연희 최용규 최성 최순영  
 한선교 허천 열 한병도  
 홍창선 황우여 홍문표

**기권 의원(2인)**  
 강성종 김애실

○索道·軌道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구논회 권영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구논회 권영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안택수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회룡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양승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상민	이성구	이시종	이영순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주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복심	장향숙	전병현	정갑윤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전병현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종복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주성영	지병문	진영	채수찬	최구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홍창선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김영선 전재희

**반대 의원(45인)**

고경화	곽성문	김성조	김애실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정부	김태환	김학송	배일도
서병수	심재철	안상수	안택수
엄호성	원회룡	유기준	윤건영
이강두	이명규	이성권	이승희
이인기	이재웅	이종구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정갑윤
정문현	정병국	정형근	주성영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황우여			

**기권 의원(10인)**

강재섭	권오을	문희	윤두환
이강래	이상배	전재희	정화원
정희수	조경태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41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진화	구논회	권영세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선미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운
김재홍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곽성문
구논회	권영세	권오을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문수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덕구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8인)**

김영숙	김정부	김태환	배일도
-----	-----	-----	-----

서병수	윤두환	이상배	이성권
이종구	이혜훈	정갑윤	정병국
정형근	주성영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한선교		

**기권 의원(4인)**

김용갑	김재경	이주호	정희수
-----	-----	-----	-----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곽성문
구논회	권영세	김낙성	김낙순
김동철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창선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황우여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기권 의원(3인)**

김문수 김충환 이인기  
 (한광원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85인, 기권 의원 3인임)

**○출석 의원(27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운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출장 의원(3인)**

김석준 류근찬 이해봉

○청가 의원(12인)

강혜숙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홍일 신국환 안경률 안홍준  
 이상열 이해찬 정동채 정진석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노동부장관 김대환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출석 정부위원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행정자치부제1차관 권오룡  
 건설교통부차관 김용덕

○기타 참석자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권영만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남궁석  
 입법차장 상원종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정진섭	경기 광주	한나라당	2005.10.28
윤두환	울산 북	한나라당	2005.10.31
유승민	대구 동을	한나라당	2005.10.31
임해규	경기 부천 원미 갑	한나라당	2005.11. 2

○특별위원장 선임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11월 2일)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11월 2일)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11월 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11월 8일)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11월 15일)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심재엽

200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9일간)  
 (11월 11일)

○상임위원 선임

위원명	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문희	보건복지	한나라당	2005. 10. 31
유승민	정무		
정진섭	행정자치		
임해규	교육		
윤두환	산업자원		

○특별위원 선임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서혜석 선병렬 양승조 이시종 이원영 최재천	열린우리당	2005. 11. 1
박세환 박승환 유기준 이재오 이재웅 주호영	한나라당	
이상열	비교섭단체 (민주당)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춘진 신학용 양승조 우윤근 이원영 최재천	열린우리당	2005. 11. 1
김재원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이재오 이재웅	한나라당	
이상열	비교섭단체 (민주당)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병호 선병렬 우윤근 이은영 임종인 정성호	열린우리당	2005. 11. 1
김기현 김재원 유기준 이재오 이재웅 주호영	한나라당	
이상열	비교섭단체 (민주당)	

##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강기정 김선미 문병호 양승조 유시민 이계안 이기우 이목희 이석현 채수찬	열린우리당	2005. 11. 7
고경화 박재완 윤건영 이주호 이혜훈 정형근 주호영 진수희	한나라당	
김종인	비교섭단체 (민주당)	
현애자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형주 노영민 박기춘 박상돈 박찬석 양형일 이광철 장경수 조일현 최철국	열린우리당	2005. 11. 7
권경석 김충환 서병수 심재엽 유정복 이인기 정두언 허태열	한나라당	
김학원	비교섭단체 (자유민주연합)	
정진석	비교섭단체	

##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통일외교통상	임종석	열린우리당	2005. 11. 2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우윤근	열린우리당	
	이재웅	한나라당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우윤근	열린우리당	
	이재웅	한나라당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우윤근	열린우리당	
	이재웅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심재엽	한나라당	2005. 11. 4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	양형일	열린우리당	2005.
	유정복	한나라당	11. 8

##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이강두	보건복지	정무	한나라당	2005.
맹형규	교육	산업자원	한나라당	10.31

##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 위원	보임 위원	교섭 단체	연월일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이원영	선병렬	열린 우리당	2005. 11. 2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선병렬	이원영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선병렬	우윤근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	고경화	남경필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선병렬	이원영	열린 우리당	2005. 11.15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	이원영	선병렬		

## ○의안 제출

##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

(2005. 10. 27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31 정부 제출)

##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 발의)

(2005. 10. 31 이성구·권경석·박계동·이상득·엄호성·이병석·진영·김석준·전재희·박종근·홍문표·안택수·박재완·고경화·박성범·김충환·유기준·허천·윤건영·나경원·고조홍·정두언·서상기·공성진·이강두·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 발의)

(2005. 10. 31 최용규·김태년·배일도·강창일·우제창·김부겸·최재천·우윤근·선병렬·이원영·김선미·이은영·배기선 의원 발의)

11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우상호 · 김재윤 · 백원우 · 이경숙 · 강혜숙 · 김재홍 · 최재성 · 정성호 · 김영주 · 이인영 의원 발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박찬숙 · 김교홍 · 김재원 · 구논회 · 김충환 · 주승용 · 심재덕 · 안병엽 · 유기준 · 김재경 · 엄호성 · 박재완 · 황우여 · 고조홍 · 공성진 · 김태년 · 안상수 · 박형준 · 이해훈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안상수 · 엄호성 · 이해봉 · 이해훈 · 박재완 · 김재원 · 이인기 · 심재철 · 황우여 · 고조홍 · 나경원 의원 발의)

**한국삼살개 보호육성법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정병국 · 강혜숙 · 고조홍 · 김영선 · 김재원 · 박재완 · 박형준 · 배기선 · 신상진 · 심재덕 · 안상수 · 엄호성 · 이명규 · 이인기 · 이해봉 · 정두언 · 정문현 · 최재성 · 황우여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기금법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박근혜 · 맹형규 · 박종근 · 김충환 · 박찬숙 · 박형준 · 이계진 · 이재오 · 이재웅 · 정병국 · 정중복 · 최구식 · 최경환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나경원 · 임태희 · 김기현 · 김명주 · 박세환 · 박순자 · 이명규 · 이재웅 · 정중복 · 서병수 · 황진하 · 이종구 · 이해훈 · 이주호 · 진수희 의원 발의)

**國會에서의證言 · 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나경원 · 임태희 · 김기현 · 김명주 · 박세환 · 박순자 · 이명규 · 이재웅 · 정중복 · 서병수 · 황진하 · 이종구 · 이해훈 · 이주호 · 진수희 의원 발의)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나경원 · 임태희 · 김기현 · 김명주 · 박세환 · 박순자 · 이명규 · 이재웅 · 정중복 · 서병수 · 황진하 · 이종구 · 이해훈 · 이주호 · 진수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정부의 UN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2005. 10. 31 나경원 의원 외 126인 발의)

11월 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박기춘 · 김태홍 · 강창일 · 문학진 · 안병엽 · 정장선 · 박명광 · 노웅래 · 심재덕 · 김교홍 · 양형일 · 우제항 · 김낙순 · 노현송 · 홍미영 의원 발의)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김한길 · 강기갑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 강성중 · 강창일 · 강혜숙 · 고진화 · 구논회 · 권선택 · 권영길 · 권오을 · 김교홍 · 김근태 · 김낙성 · 김낙순 · 김덕규 · 김동철 · 김명자 ·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 김영주 · 김영춘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종률 · 김종인 · 김진표 · 김춘진 · 김충환 · 김태년 · 김태홍 · 김혁규 · 김현미 · 김형주 · 김효석 · 김희선 · 김희정 · 남경필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류근찬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 민병두 · 박계동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박찬석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재관 · 서혜석 · 선병렬 · 송영길 · 신계륜 · 신국환 · 신기남 · 신상진 · 신중식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덕 · 안명옥 · 안민석 · 안병엽 · 안영근 · 안홍준 · 양승조 · 양형일 · 엄동연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원희룡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유시민 ·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래 · 이경숙 · 이계경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연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민 · 이상열 · 이석현 · 이승희 · 이시중 · 이영순 · 이영호 · 이용희 · 이원영 · 이윤성 · 이은영 · 이인영 · 이재오 · 이종걸 · 이종구 · 이해봉 · 이호웅 · 이화영 · 임종석 · 임종인 · 임채정 ·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전병현 · 정갑윤 · 정덕구 · 정동채 · 정두언 · 정몽준 · 정문현 · 정병국 · 정봉주 · 정성호 · 정세균 · 정의용 · 정장선 · 정진석 · 정청래 · 제종길 · 조정태 · 조배숙 · 조성래 · 조성태 · 조일현 · 조정



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천영세·천정배·최성·최규성·최규식·최순영·최용규·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한화갑·현애자·홍미영·홍재형·홍준표·홍창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안상수·엄호성·이해봉·이혜훈·김재원·박형준·이인기·심재철·황우여·최경환·고조홍·나경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맹형규·배일도·박계동·전여옥·배기선·최인기·황우여·이주호·심재철·정병국·진수희·김재원·김광원·정희수·신상진·정화원·김충환·최경환·이혜훈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이윤성·김무성·김태홍·김태환·배일도·안상수·이경재·이명규·이병석·이인기·엄호성·홍준표·안명옥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김교홍·김용갑·최철국·김태홍·이호웅·한광원·김우남·문병호·김선미·신학용·박기춘·박명광·안영근·강성중·오영식·김태년·노영민·조정식·최재성·정봉주·백원우·김영주·정장선·한병도·임종석·이상열·홍미영·조성래·장복심·최용규·신기남·유필우·김낙순·김명자·김혁규·노현송·안병엽·최규성·전병현·송영길·조배숙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김태홍·배기선·최규성·정봉주·배일도·최철국·염동연·김태년·김동철·지병문·양형일·정성호·유승희 의원 발의)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발의)

(2005. 11. 1 김태홍 의원 외 143인 발의)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

원 대표발의)

(2005. 11. 1 이병석·김기현·곽성문·김재원·박순자·엄호성·고조홍·정희수·김우남·이상열·김성조·윤두환 의원 발의)

**오존層보호를위한特定物質의製造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김학원·권오을·권철현·김낙성·김정훈·안상수·엄호성·이계진·이윤성·이인제·정문헌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김영춘·김원웅·송영길·심재철·안민석·안영근·양형일·이목희·이상경·임종석·이인영·우상호·장복심·정청래 의원 발의)

11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문석호·박재완·이해봉·엄호성·김종률·서혜석·신학용·배일도·박찬숙·우제창·김태년·고조홍·안병엽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문석호·엄호성·김종률·서혜석·신학용·김부겸·김태홍·우제창·안상수·김태년·고조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안명옥·고경화·김충환·이재창·허천·정갑윤·김정훈·박재완·이주호·정화원·최구식·홍문표·나경원·유기준·이재웅·권오을·김양수·고조홍·김정권·윤건영·전여옥 의원 발의)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김성곤·김명자·김재홍·노웅래·박찬석·선병렬·안상수·염동연·우윤근·유선호·정장선·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유선호·정봉주·임종석·강혜

숙·정성호·정청래·윤호중·김태년·김태  
홍·김교홍·정의용·한명숙·김부겸·이화  
영·한광원·김혁규·최성·김원웅 의원 발의)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원 의  
원 대표발의)

(2005. 11. 1 김학원·권오을·권철현·김낙  
성·김정훈·박성범·안상수·엄호성·이계  
진·이윤성·이인제·정진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유기준·안상수·나경원·최인  
기·이계경·정병국·이인기·박세환·박재  
완·엄호성·심재철·이성권·고조홍·배일  
도·공성진·이혜훈·신상진 의원 발의)

**國會圖書館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 유기준·안상수·나경원·최인  
기·이계경·이인기·박세환·박재완·엄호  
성·심재철·이성권·고조홍·공성진·김재  
원·이혜훈·신상진 의원 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유기준·안상수·나경원·최인  
기·이계경·정병국·이인기·박세환·박재  
완·엄호성·심재철·이성권·고조홍·공성  
진·이혜훈·신상진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유기준·안상수·나경원·최인  
기·이계경·이인기·박세환·박재완·엄호  
성·심재철·이성권·이혜훈·고조홍·배일  
도·공성진·김재원·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서혜석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1 서혜석·김태홍·염동연·이계  
경·엄호성·김명자·권선택·강창일·한명  
숙·이해봉·김재운·이성권·박찬석·박재  
완·김희정·우제창·홍창선·이인기·심재  
철·안상수·박상돈·정성호·김종률 의원 발  
의)

1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폐지법  
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정두언·유정복·이인제·엄호

성·안상수·박재완·이혜훈·이인기·공성  
진·신상진·박순자·이계진·정화원·고경  
화·윤건영·이주호·이재웅 의원 발의)

11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軍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박찬석·강혜숙·고조홍·권경  
석·김부겸·김성곤·김태년·김태홍·김혁  
규·노용래·문석호·배일도·심재덕·엄호  
성·유재건·유필우·윤원호·이경숙·이광  
철·이용희·이원영·이화영·임종인·장항  
숙·조성래·한광원·황진하·홍재형 의원 발  
의)

11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심상정·권영길·노회찬·단병  
호·강기갑·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2 심상정·권영길·노회찬·단병  
호·강기갑·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심상정·권영길·노회찬·단병  
호·강기갑·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 박찬숙·김희선·이해봉·박세  
환·김재원·구논희·김충환·주승용·심재  
덕·엄호성·심재철·이계경·이인기·정성  
호·박재완·박상돈·김종률 의원 발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海外移住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  
의)

(2005. 11. 2 권철현·정화원·박형준·김희  
정·김재경·원희룡·이성권·김석준·곽성  
문·이계경 의원 발의)

11월 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都市開發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11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觀光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박찬숙 · 이명규 · 안상수 · 이주호 · 안병엽 · 김재원 · 엄호성 · 황우여 · 고조홍 · 김태년 · 맹형규 · 구논회 · 김충환 · 주승용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박찬숙 · 나경원 · 최인기 · 안상수 · 이인기 · 유기준 · 엄호성 · 박재완 · 고조홍 · 맹형규 · 김재원 · 구논회 · 김충환 · 주승용 · 심재덕 · 신상진 · 이혜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11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11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1. 2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문학진 · 김정훈 · 김현미 · 김형주 · 박명광 · 배일도 · 신중식 · 안상수 · 엄호성 · 이근식 · 이상경 · 이호웅 · 정성호 · 장영달 · 최규성 · 황우여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문학진 · 강혜숙 · 김부겸 · 김영춘 · 김태년 · 김태홍 · 김현미 · 김형주 · 노현송 · 박찬석 · 송영길 · 안상수 · 엄호성 · 이근식 · 이원영 · 이호웅 · 장영달 · 정봉주 · 정성호 · 정청래 · 채수찬 · 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이병석 · 김기현 · 광성문 · 김재원 · 박순자 · 엄호성 · 고조홍 · 정희수 · 김우남 · 이상열 · 김성조 · 윤두환 의원 발의)

11월 3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정병국 · 이계경 · 엄호성 · 김재원 · 배일도 · 박형준 · 정종복 · 권영세 · 김희정 · 정문현 · 고흥길 · 이경재 · 김정훈 · 남경필 · 원희룡 · 이재오 · 진수희 의원 발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정병국 · 이인기 · 이성권 · 권영세 · 남경필 · 정종복 · 김희정 · 이경재 · 김정훈 · 원희룡 · 박승환 · 박재완 · 정문현 · 이계경 · 이재오 · 고흥길 · 박형준 · 진수희 · 권오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안민석 · 강혜숙 · 김재윤 · 노용래 · 민병두 · 우상호 · 윤원호 · 이광철 · 이경숙 · 천영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4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11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권경석 · 강재섭 · 이강두 · 최연희 · 송영선 · 이진구 · 정병국 · 김영숙 · 임인배 · 이한구 · 최병국 · 유승민 · 서병수 · 박진 · 김덕룡 · 유기준 · 윤두환 · 김기춘 · 정갑윤 · 박승환 · 이방호 · 황진하 · 진수희 · 고조홍 · 심재엽 · 김석준 · 박재완 · 이성구 · 김태환 · 허천 · 김학송 · 김정부 · 이혜훈 · 윤건영 · 김애실 · 이성권 · 광성문 · 김문수 · 이경재 · 박순자 · 전재희 · 김충환 · 임태희 · 정종복 · 나경원 · 이명규 · 김양수 · 박세환 · 김성조 · 김정권 · 김재경 · 이주호 · 최구식 · 김영덕 · 권오을 · 안경률 · 김정훈 · 이윤성 · 김무성 · 이상득 · 진영 · 이상배 · 권영세 · 안상수 · 엄호성 · 이인기 · 이재창 · 유정복 · 김형오 · 김병호 · 김명주 · 정의화 · 김희정 · 박형준 · 안홍준 · 최경환 · 주호영 · 이재웅 · 김용갑 · 안택수 · 장윤석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정종복 · 강재섭 · 임태희 · 김기현 · 김명주 · 나경원 · 박세환 · 박순자 · 이명

규 · 이재웅 · 서병수 · 황진하 · 이종구 · 이해  
훈 · 이주호 · 진수희 의원 외 111인 발의)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김효석 · 김종인 · 김홍일 · 신중  
식 · 손봉숙 · 이낙연 · 이상열 · 이승희 · 이정  
일 · 최인기 · 한화갑 의원 발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법안**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10건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船員法 일부개정법률안**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導船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3 정부 제출)

11월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3 최경환 · 권오을 · 김애실 · 김재  
원 · 엄호성 · 이상배 · 이해훈 · 윤건영 · 허태  
열 · 우제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3 윤건영 · 박재완 · 최구식 · 김정  
부 · 이인기 · 이해봉 · 김애실 · 김재원 · 이주  
호 · 김양수 · 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3 염동연 · 김낙순 · 권선택 · 김영  
선 · 김효석 · 박기춘 · 변재일 · 안병엽 · 양형  
일 · 우제항 · 유승희 · 서혜석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홍창선 · 장영달 · 정갑윤 · 민병  
두 · 선병렬 · 서혜석 · 최규성 · 이낙연 · 이계

진 · 유인태 · 박명광 · 이인영 · 김낙순 · 김태  
홍 · 이목희 · 안상수 · 이종걸 · 김석준 · 이은  
영 · 엄호성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김정훈 · 이해훈 · 박재완 · 박세  
환 · 안경률 · 임태희 · 심재철 · 정병국 · 박찬  
숙 · 김양수 · 이인기 · 정성호 · 박상돈 · 김재  
원 · 이근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4 박재완 · 박병석 · 김석준 · 이주  
호 · 김정부 · 윤건영 · 김종률 · 최용규 · 서상  
기 · 이기우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에 회부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3 이상경 · 강길부 · 김선미 · 김현  
미 · 문병호 · 문학진 · 박명광 · 박재완 · 신학  
용 · 이계경 · 이근식 · 정성호 · 조경태 의원 발  
의)

11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2005. 11. 3 정부 제출)

11월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권오  
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권오을 · 광성문 · 이성권 · 임인  
배 · 김성조 · 권경석 · 김정권 · 서상기 · 김광  
원 · 최경환 · 강성중 · 김무성 · 남경필 · 주성  
영 · 한선교 · 김재윤 · 전재희 · 김재원 · 이인  
기 의원 발의)

11월 7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3 정부 제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권오을 · 광성문 · 이성권 · 임인  
배 · 김성조 · 권경석 · 김정권 · 서상기 · 김광  
원 · 최경환 · 정종복 · 김무성 · 남경필 · 주성  
영 · 김재윤 · 김재원 · 이인기 의원 발의)

**敎員의勞働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  
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 이목희 · 강창일 · 김태홍 · 김형주 · 우상호 · 우원식 · 유선호 · 이기우 · 이호웅 · 장복심 · 정성호 · 조정식 · 최규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신학용 · 김태홍 · 남경필 · 문병호 · 문석호 · 박명광 · 신국환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이영호 · 이해봉 · 이혜훈 · 조경태 의원 발의)

11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문병호 · 엄호성 · 이해봉 · 이인기 · 우제창 · 유필우 · 이영호 · 김덕규 · 한광원 · 고조홍 · 유기준 · 신학용 · 장향숙 의원 발의)

11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문병호 · 유필우 · 이영호 · 김덕규 · 한광원 · 장향숙 · 이광철 · 이기우 · 이은영 · 신학용 · 정화원 의원 발의)

**國立癌센터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문병호 · 박재완 · 유필우 · 이영호 · 김덕규 · 한광원 · 장향숙 · 이광철 · 이기우 · 정화원 · 신학용 의원 발의)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문병호 · 엄호성 · 박재완 · 유필우 · 이영호 · 김덕규 · 한광원 · 장향숙 · 이광철 · 이기우 · 정화원 · 신학용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안명옥 · 엄호성 · 박세환 · 박재완 · 이해봉 · 유기준 · 신상진 · 이인기 · 최인기 · 이윤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황진하 · 이해봉 · 심재철 · 박세환 · 박재완 · 안상수 · 채수찬 · 김재경 · 이경재 · 정성호 · 김재원 · 정병국 · 엄호성 · 이인

기 · 고조홍 · 고경화 의원 발의)

**大韓民國在郷軍人會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박명광 · 김교홍 · 우윤근 · 문학진 · 정장선 · 신학용 · 이상경 · 지병문 · 이근식 · 이화영 · 홍창선 · 김현미 · 박기춘 · 안병엽 · 채수찬 · 염동연 · 양형일 · 전병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김태년 · 유시민 · 신상진 · 이광철 · 배기선 · 한병도 · 문석호 · 백원우 · 김태홍 · 오영식 · 선병렬 의원 발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計量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8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검찰총장후보자(정상명) 인사청문요청안**  
(2005. 11. 4 대통령 제출)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박재완 · 심상정 · 임종인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염동연 · 김형주 · 배일도 · 서혜석 · 안영근 · 김태홍 · 우제창 · 유승희 · 이영호 · 이경숙 · 임종인 · 지병문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염동연 · 김형주 · 배일도 · 서혜석 · 안영근 · 김태홍 · 우제창 · 유승희 · 이영호 · 이경숙 · 임종인 · 지병문 의원 발의)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우윤근 · 주승용 · 양형일 · 박명광 · 안민석 · 최규식 · 신중식 · 노영민 · 김낙순 · 이정일 · 정성호 · 장향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김낙순·이영호·홍창선·김태홍·우윤근·엄호성·우원식·신학용·조일현·노영민·박명광·염동연 의원 발의)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김효석·이근식·김태홍·최인기·엄호성·이정일·김홍일·이낙연·변재일·박상돈·김교홍·배일도·이주호·신상진 의원 발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11. 8 정부 제출)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정성호·이원영·심재철·선병렬·박상돈·우제창·한광원·이호웅·김선미·김영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11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5. 11. 7 정부 제출)

**騷音·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제종길·장향숙·장복심·임종석·신상진·김형주·우원식·이상경·단병호 의원 발의)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제종길·단병호·장향숙·장복심·임종석·신상진·김형주·이상경 의원 발의)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장향숙·장복심·임종석·신상진·김형주·우원식·이상경·단병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인기·황우여·엄호성·김정권·정병국·이해봉·안상수·김재원·이혜훈·권경석·권오을·고홍길 의원 발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정진석·이용희·김기춘·고홍길·이인기·유인태·최규식·김충환·박기춘·류근찬·이명규·조성래·우제항·심재덕·유정복·서병수 의원 발의)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발의)

(2005. 11. 9 우원식 의원 외 90인 발의)

이상 3건 11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심재철·유기준·이계경·엄호성·박세환·이해봉·심재덕·박재완·김충환·이윤성·안상수·이인기·김태년·전여옥·황우여 의원 발의)

**企業豫算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基金管理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심재철·이계경·엄호성·김재원·박세환·심재덕·김충환·조경태·이인기·전여옥·김태년·황우여 의원 발의)

11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인영·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태년·노영민·문학진·박상돈·백원우·선병렬·신계륜·엄호성·우상호·유기홍·이기우·이목희·이원영·이호웅·임채정·장영달·조배숙·정봉주·정성호·지병문·최규성·최재성·홍미영 의원 발의)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인영·강창일·강혜숙·구논

회 · 김태년 · 노영민 · 문학진 · 박상돈 · 백원우 · 선병렬 · 신계륜 · 엄호성 · 이상호 · 유기홍 · 이기우 · 이목희 · 이원영 · 이호웅 · 임채정 · 장영달 · 조배숙 · 정봉주 · 정성호 · 지병문 · 최규성 · 최재성 · 홍미영 의원 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文化藝術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1. 7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심재철 · 이계경 · 엄호성 · 김재원 · 박세환 · 박재완 · 김충환 · 안상수 · 이인기 · 전여옥 · 이윤성 의원 발의)

11월 9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심재철 · 이계경 · 엄호성 · 김재원 · 박재완 · 김충환 · 이윤성 · 이인기 · 전여옥 · 이계진 · 황우여 의원 발의)

11월 9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성구 · 강창일 · 고조홍 · 권경석 · 김재원 · 박계동 · 박세환 · 신학용 · 심재덕 · 심재철 · 안상수 · 유기준 · 이상경 · 이재오 · 이해봉 · 정문헌 · 홍준표 · 황진하 의원 발의)

11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國立癌센터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기우 · 이목희 · 이계경 · 김태홍 · 김종률 · 우원식 · 김태년 · 신학용 · 이인영 · 이상경 · 최규성 · 한병도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기우 · 유필우 · 이계경 · 김태홍 · 이인기 · 김종률 · 이목희 · 우원식 · 김태년 · 신학용 · 이인영 · 이상경 · 최규성 · 한병도 의원 발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2005. 11. 8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5. 11. 8 정부 제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임인배 · 고조홍 · 공성진 · 권경석 · 권오을 · 김석준 · 김성조 · 김재원 · 김충환 · 김태환 · 김희정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호성 · 이계경 · 이명규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親環境農業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海運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5. 11. 8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노웅래 · 안민석 · 김낙순 · 고조홍 · 엄호성 · 우원식 · 장복심 · 신중식 · 우제창 · 황우여 · 김태홍 · 강길부 · 강혜숙 · 조정태 · 신기남 · 김종률 · 정청래 · 박찬석 · 한광원 의원 발의)

11월 9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8 정부 제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문학진 · 강길부 · 김태홍 · 김형주 · 노현송 · 박명광 · 신학용 · 이근식 · 이상경 · 이인영 · 장영달 · 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정성호 · 박재완 · 김성곤 · 우제창 · 양승조 · 이원영 · 심재덕 · 이호웅 · 김선미 · 선병렬 의원 발의)

**지식재산법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김영선 · 김선미 · 배일도 · 배기선 · 강혜숙 · 엄호성 · 고조홍 · 이인기 · 안상수 · 김재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5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장영달 · 이광철 · 정의용 · 최성 · 이화영 · 유선호 · 신기남 · 김혁규 · 임종석 · 임채정 · 김덕룡 · 이성권 · 최병국 · 박성범 · 권경석 · 유재건 · 염동연 · 권영길 · 김원웅 ·

제종길 · 정두언 · 홍창선 · 이계진 · 문학진 · 김종률 · 엄호성 · 정청래 · 노영민 · 한명숙 · 정봉주 · 강창일 · 안민석 · 이미경 · 김재윤 · 강혜숙 · 이경숙 · 신학용 · 이상경 · 박상돈 · 고조홍 · 노용래 의원 발의)

**著作権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박찬숙 · 이인기 · 나경원 · 최인기 · 안상수 · 강혜숙 · 맹형규 · 구논희 · 김충환 · 주승용 · 고조홍 · 이해봉 · 김재경 · 박세환 · 조경태 · 이호웅 · 김영춘 · 박재완 · 김재원 · 이상경 · 최성 · 정병국 · 유기준 · 이윤성 · 황우여 · 김태년 · 배일도 · 노현송 · 정희수 · 엄호성 · 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建設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허천 · 김재원 · 이해봉 · 박세환 · 박형준 · 정문헌 · 심재철 · 정병국 · 황우여 · 안택수 의원 발의)

**外國人土地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홍준 · 유기준 · 정문헌 · 안상수 · 권경석 · 정갑윤 · 박형준 · 이강두 · 김양수 · 김정부 · 최구식 · 신상진 · 이영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홍준 · 김재경 · 정문헌 · 진수희 · 안상수 · 권경석 · 정갑윤 · 박형준 · 이강두 · 김양수 · 김정부 · 최구식 · 신상진 · 이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05. 11. 9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경률 · 박재완 · 김용갑 · 박순자 · 이윤성 · 김기현 · 광성문 · 엄호성 · 김태년 · 이해훈 · 이성권 · 서병수 · 한병도 · 김정훈 · 나경원 의원 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이한구 · 유승민 · 엄호성 · 김정훈 · 김재원 · 이해훈 · 주성영 · 이인기 · 김양수 · 안택수 · 송영선 · 나경원 · 김정부 · 남경필 · 윤건영 · 우제창 · 김애실 · 이종구 · 최경환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이한구 · 유승민 · 엄호성 · 김정훈 · 김재원 · 이해훈 · 주성영 · 이인기 · 김양수 · 안택수 · 송영선 · 나경원 · 김정부 · 남경필 · 박병석 · 윤건영 · 우제창 · 김애실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김영주 · 김형주 · 박영선 · 신상진 · 윤원호 · 배일도 · 김선미 · 김태홍 · 이은영 · 강혜숙 · 지병문 · 장향숙 · 최순영 의원 발의)

11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경률 · 박재완 · 김용갑 · 박순자 · 이윤성 · 김기현 · 광성문 · 엄호성 · 김태년 · 이해훈 · 이성권 · 서병수 · 한병도 · 김정훈 · 나경원 의원 발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경률 · 박재완 · 김용갑 · 박순자 · 이윤성 · 김기현 · 광성문 · 엄호성 · 김태년 · 이해훈 · 이성권 · 서병수 · 한병도 · 김정훈 · 나경원 의원 발의)

**不正競争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경률 · 김용갑 · 이윤성 · 광성문 · 엄호성 · 김태년 · 이해훈 · 이성권 · 서병수 · 이상열 · 한병도 · 김정훈 · 나경원 의원 발의)

**부품 ·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경률 · 박재완 · 김용갑 · 박순자 · 이윤성 · 김기현 · 광성문 · 엄호성 · 김태년 · 이해훈 · 이성권 · 서병수 · 이상열 · 김정훈 · 나경원 의원 발의)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



**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경률 · 김용갑 · 이윤성 · 광성문 · 엄호성 · 김태년 · 이혜훈 · 이성권 · 서병수 · 이상열 · 한병도 · 김정훈 · 나경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식품안전기본법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이기우 · 최규성 · 장향숙 · 한병도 · 이호웅 · 우원식 · 심재덕 · 한명숙 · 문학진 · 홍미영 · 이인영 의원 발의)

**國民健康增進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홍준 · 유기준 · 김재경 · 정문헌 · 안상수 · 권경석 · 정갑윤 · 박형준 · 이강두 · 김양수 · 김정부 · 최구식 · 신상진 · 정장선 · 이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이한구 · 유승민 · 엄호성 · 김정훈 · 김재원 · 이혜훈 · 주성영 · 이인기 · 김양수 · 안택수 · 송영선 · 나경원 · 김정부 · 남경필 · 박병석 · 윤건영 · 우제창 · 김애실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홍준 · 유기준 · 안상수 · 김영덕 · 김재경 · 정병국 · 권경석 · 정갑윤 · 박형준 · 박상돈 · 이강두 · 김양수 · 김정부 · 최구식 · 신상진 · 정장선 · 이영호 의원 발의)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백지화 촉구결의안**

(2005. 11. 9 김성조 · 김태환 · 심재엽 · 주호영 · 이진구 · 선병렬 · 박승환 · 안경률 · 권경석 · 김재원 · 박찬석 · 최구식 · 김형오 · 이상배 · 김기현 · 주성영 · 김학송 · 김광원 · 박세환 · 광성문 · 장윤석 · 조경태 · 김정부 · 최병국 · 이상열 · 변재일 · 서상기 · 권오을 · 엄호성 · 정의화 · 김석준 · 허천 · 정갑윤 · 이인기 · 안택수 · 정종복 · 이해봉 · 이명규 · 임인배 · 박종근 · 정희수 의원 발의)

11월 14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9 안홍준 · 안상수 · 김영덕 · 권경석 · 정갑윤 · 박형준 · 박상돈 · 이강두 · 김양수 · 김정부 · 최구식 · 신상진 · 이영호 의원 발의)

11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김영춘 · 신학용 · 이근식 · 엄호성 · 이해봉 · 진수희 · 고조홍 · 노현송 · 우제창 · 안민석 · 이혜훈 · 문석호 · 강길부 · 박영선 · 송영길 · 이은영 · 이광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박근혜 · 이규택 · 강재섭 · 엄호성 · 이해훈 · 광성문 · 김양수 · 박진 · 박순자 · 진영 · 김희정 · 김형오 · 김애실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조배숙 · 구논희 · 박상돈 · 안영근 · 유기홍 · 유필우 · 이인영 · 이광철 · 정봉주 · 정장선 · 지병문 · 정성호 · 최재성 의원 발의)

11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사할린 동포의 날’ 지정을 위한 결의안**

(2005. 11. 10 김원웅 · 정청래 · 강창일 · 김영춘 · 장경수 · 김희선 · 안상수 · 고진화 · 이영순 · 이종걸 · 이상민 · 선병렬 · 박병석 · 한명숙 의원 발의)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1968년 유엔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 가입 촉구 건의안**

(2005. 11. 10 김원웅 · 김태홍 · 박명광 · 배일도 · 강창일 · 김재홍 · 유선호 · 노웅래 · 이광철 · 김홍일 · 송영길 · 안민석 · 이영순 · 신국환 의원 발의)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최순영 · 천영세 · 현애자 · 박세환 · 한화갑 · 임종인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최순영 · 천영세 · 현애

자·박세환·한화갑·임종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정형근·박재완·이계진·이근  
 식·박계동·정화원·고경화·유필우·김중  
 인·장향숙·엄호성·김용갑·이혜훈·공성  
 진·황진하·임태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  
 찬·단병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0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  
 찬·단병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國會事務處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0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  
 찬·단병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國會議事館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0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  
 찬·단병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  
 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  
 자·박세환·한화갑·임종인·류근찬 의원 발  
 의)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10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  
 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  
 자·박세환·한화갑·임종인·류근찬 의원 발  
 의)

**조건불리지역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  
 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  
 자·박세환·한화갑·임종인·류근찬 의원 발

의)  
**발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0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  
 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  
 자·박세환·한화갑·임종인·류근찬 의원 발  
 의)

**農業·農村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  
 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  
 자·박세환·한화갑·임종인·류근찬 의원 발  
 의)

이상 5건 11월 1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5. 11. 10 정부 제출)

**産業發展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  
 의)

(2005. 11. 10 오영식·문학진·민병두·김태  
 흥·이광재·김태년·배기선·서갑원·한병  
 도·노영민·최철국·최규성·김교홍·강길  
 부 의원 발의)

**發明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  
 의)

(2005. 11. 10 박근혜·이규택·강재섭·엄호  
 성·이혜훈·곽성문·김양수·박진·박순  
 자·진영·김희정·김형오·김애실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1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  
 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1 김교홍·박명광·노현송·정종  
 복·엄호성·이운성·이영호·문병호·신학  
 용·최용규·이화영·공성진·박상돈·이상  
 경·한광원·유필우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1 나경원·김정훈·임태희·이  
 명규·정두언·김희정·박재완·강길부·오  
 제세·김애실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효석·김홍일·손봉숙·이낙  
 연·이상열·이정일·엄호성·최규식·최인

기·한화갑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변재일·이종걸·홍창선·유승희·권선택·강성중·류근찬·심재엽·안병엽·우제항·진영 의원 발의)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선미·이영호·정성호·김동철·한광원·신학용·백원우·이상경·김영선·염동연 의원 발의)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선미·이영호·정성호·김동철·한광원·신학용·이상경·김영선·염동연·김재윤 의원 발의)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정봉주·김영주·백원우·구논회·이인영·최재성·유기홍·조배숙·지병문·장영달·우원식·민병두·이미경 의원 발의)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정봉주·김영주·백원우·구논회·이인영·최재성·유기홍·조배숙·지병문·우원식·민병두·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선미·이영호·정성호·김동철·한광원·신학용·이상경·박재완·김영선·염동연 의원 발의)

1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박상돈·조배숙·김태환·노현송·신상진·심재철·양승조·엄호성·이시중·정장선·조경태 의원 발의)

11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豫算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충환·이인기·엄호성·이해

봉·고조흥·안상수·박세환·신상진·나경원·박찬숙 의원 발의)

11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충환·이명규·유기준·심재철·이인기·황우여·임인배·이성권·이윤성·김애실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양승조·이상경·박재완·이광철·문석호·김한길·김종률·최규식·김태홍·김재경·안상수·엄호성·신학용·정봉주·강창일·고조흥·박상돈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용갑·곽성문·김기현·김태년·김태홍·김학송·박순자·박재완·이계진·이병석·이상열·최규성·최철국 의원 발의)

11월 14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최재천·이근식·문학진·이상경·정성호·신학용·임종인·박명광·송영길·임종석 의원 발의)

11월 14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정두언·김재경·이계경·임태희·이해봉·박세환·신상진·김재원·엄호성·안상수·정성호·최규식·박재완·고조흥·안민석·이은영·나경원·이경재·박승환 의원 발의)

11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4 이계경·박찬숙·심재철·이성권·정병국·고조흥·김희정·김정권·임태희·박형준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4 이계경·박찬숙·심재철·이성권·정병국·고조흥·김희정·김정권·정문

헌 · 박형준 의원 발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4 김정훈 · 김정권 · 이해훈 · 윤건영 · 유승민 · 신학용 · 이인기 · 안상수 · 심재철 · 엄호성 · 고조홍 · 박찬숙 · 박재완 · 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4 정형근 · 엄호성 · 김선미 · 황우여 · 배일도 · 이영호 · 이해봉 · 고조홍 · 김재원 · 이주호 · 박재완 · 심재철 · 안상수 · 이해훈 · 이인기 · 유승민 의원 발의)

11월 15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觀光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4 노웅래 · 김영주 · 강길부 · 이영호 · 한광원 · 전병헌 · 김종률 · 박찬석 · 안민석 · 이시중 · 김태홍 · 장복심 · 정청래 · 강혜숙 · 이광철 · 박상돈 의원 발의)

11월 1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국가청렴위원회위원(박인제) 추천안**

(2005. 11. 14 의장 제의)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4 이기우 · 최규성 · 장향숙 · 한병도 · 김종률 · 이호웅 · 우원식 · 한명숙 · 김태홍 · 장영달 · 강혜숙 · 박상돈 · 김덕규 의원 발의)

11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이상열 · 우윤근 · 이낙연 · 김태년 · 최인기 · 최규성 · 이윤성 · 김교홍 · 최철국 · 이병석 · 안경률 의원 발의)

**國稅徵收法 일부개정법률안**(유시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유시민 · 김태홍 · 엄호성 · 신학용 · 유선호 · 김태년 · 강창일 · 장향숙 · 이상경 · 유기홍 · 안병엽 · 이광철 · 문석호 · 김형주 · 송영길 · 이경숙 · 이계안 의원 발의)

이상 2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조경태 · 신중식 · 우원식 · 임채정 · 최규성 · 이호웅 · 김낙순 · 조일현 · 노웅래 · 이미경 · 노영민 · 한광원 · 김형주 · 김태홍 · 이기우 · 조정식 · 이목희 · 이화영 · 선병렬 · 민병두 · 김동철 · 장향숙 · 이영호 · 홍준표 · 최규식 · 정봉주 · 김용갑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시민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유시민 · 안상수 · 김태홍 · 엄호성 · 김종률 · 신학용 · 유선호 · 김태년 · 안병엽 · 장향숙 · 박재완 · 정병국 · 유기홍 · 이광철 · 문석호 · 이상경 · 김형주 · 송영길 · 이경숙 · 이계안 의원 발의)

이상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나경원 · 이계경 · 유승민 · 김재경 · 안상수 · 박재완 · 이명규 · 이강두 · 이진구 · 김충환 의원 발의)

정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2005. 11. 15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이인기 · 김정권 · 이해봉 · 심재철 · 김종률 · 윤건영 · 신상진 · 이주호 · 정병국 · 나경원 · 노현송 · 엄호성 · 고조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유기홍 · 신상진 · 유시민 · 박세환 · 제종길 · 이상경 · 김태홍 · 안민석 · 박상돈 · 백원우 · 유선호 · 정봉주 · 신중식 · 노웅래 · 강혜숙 · 엄호성 · 이해봉 · 노현송 · 구논회 · 최재성 · 신학용 · 최순영 · 이광철 · 황우여 · 이인영 · 조배숙 · 김종률 · 지병문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김영선 · 박세환 · 안상수 · 엄호성 · 이인기 · 김재원 · 김선미 · 배일도 · 배기선 · 신상진 · 고조홍 · 김석준 · 서상기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이상경 · 강길부 · 강창일 · 김선미 · 김현미 · 문학진 · 박명광 · 신학용 · 이근식 · 정성호 · 조경태 의원 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손지열) 인사청문요청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호영) 인사청문요청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손기식)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3건 2005. 11. 9 대법원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5. 11. 15 교육위원장 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5. 11. 15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5. 11. 15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위문금 각출의 건**

(2005. 11. 16 의장 제의)

**휴회의 건**

(2005. 11. 16 의장 제의)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6일간)

## ○의안 심사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2005. 7. 15 임종인 · 강기갑 · 강기정 · 강창일 · 고진화 · 권영길 · 현애자 · 김원웅 · 김재윤 · 김태년 · 노회찬 · 단병호 · 문석호 · 박찬석 · 배일도 · 손봉숙 · 심상정 · 유승희 · 이영순 · 이원영 · 이인영 · 임종석 · 장경수 · 장향숙 · 정봉주 · 정청래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최재천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初·中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4. 12 정봉주 · 김홍일 · 유기홍 · 지병문 · 김효석 · 김성곤 · 최재성 · 백원우 · 김대홍 · 구논회 · 조배숙 · 강기정 · 이인영 · 신기남 · 유시민 · 이은영 · 배기선 · 우원식 · 박찬석 · 이정숙 · 박찬숙 · 최순영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8. 23 정봉주 · 한광원 · 김부겸 · 구논회 · 최순영 · 노현송 · 이미경 · 최규식 · 조배숙 · 지병문 · 임종인 · 신기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2005. 4. 18 이군현 · 엄호성 · 황진하 · 박재완 · 양승조 · 김석준 · 안병엽 · 김영숙 · 이계경 · 안택수 · 진수희 · 정두언 · 신국환 · 김재원 · 고경화 · 이혜훈 의원 발의)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5. 4. 19 이주호 · 김영숙 · 김재경 · 김재원 · 박성범 · 박재완 · 안명옥 · 엄호성 · 유기준 · 유승민 · 윤건영 · 최규식 의원 발의)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

(2005. 5. 3 권철현 · 고흥길 · 김영선 · 김용갑 · 김정훈 · 김희정 · 남경필 · 박창달 · 박형준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이성권 · 조경태 의원 발의)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4. 12. 3 이주호 · 권철현 · 맹형규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찬숙 · 박창달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윤건영 · 이근식 · 이윤성 · 이해봉 · 이혜훈 · 정문현 · 최규식 의원 발의)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8. 30 정부 제출)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교육위원장 보고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005. 2. 28 한국방송공사 제출)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005. 2. 28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5. 9. 30 정형근·최인기·정화원·김선미·이인제·안명옥·이강두·강길부·최경환·문병호·이낙연·김부겸·김종인·이상배·김춘진·권오을·이석현·권철현·고경화·박재완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母子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2. 3 박영선·홍미영·유승희·한명숙·김명자·이기우·김선미·강기정·김영주·정청래·민병두·김춘진·강혜숙 의원 발의)

**母子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4. 8 정부 제출)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0. 6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발의)**

(2005. 10. 14 조경태 의원 외 143인 발의)

**都市鐵道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5. 6. 2 주승용·배일도·김성곤·노현송·김덕규·허천·정봉주·홍창선·안경률·이근식·이상경·조일현·구논희·노웅래·정성호·강길부·최인기·김태홍·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索道·軌道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5. 19 정부 제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005. 6. 4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김기석 의원 대표발의)**

(2005. 3. 8 김기석·강기정·김맹곤·노웅래·민병두·박상돈·이낙연·이철우·장경수·장복심·주승용·홍미영 의원 발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5. 8. 30 안상수·엄호성·정희수·박재완·김재원·이해봉·황우여·이윤성·윤건영·신상진·나경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6. 9 이혜훈·김병호·허태열·안홍준·정갑윤·안상수·한선교·김학송·김태환·허천·이윤성 의원 발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05. 8. 30 김학송·김병호·김명주·김정권·박재완·서병수·임태희·김한길·한선교·이혜훈 의원 발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발의)**

(2005. 9. 26 김동철 의원 외 143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5. 7. 11 최인기·이정일·최병국·노영민·이근식·이해봉·안택수·이낙연·김기석·우제항·김재홍·엄호성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5. 7. 13 노영민·주승용·김종률·최인기·채수찬·김양수·조경태·박승환·이시종·장복심·김혁규·심재엽·박상돈·신중식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5. 7. 19 최인기·박세환·박재완·엄호성·최규성·이해봉·이시종·오제세·이혜훈·이근식·박상돈·김명주·이재오·황우여·나경원·김성곤·이상경·허태열·정봉주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21 정부 제출)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6. 13 김양수·심상정·정병국·박승환·이성권·남경필·박형준·김명주·안홍준·조승수·김정훈·이종구·권영길·권오을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5. 7. 18 김정훈·최규성·김양수·최인기·채수찬·김종률·박승환·김혁규·노영민·김명주·심재엽·이시중·김재원·정갑윤·이계안·우제창·이혜훈·김병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8. 31 이혜훈·박재완·임태희·서병수·김학송·허천·정희수·최경환·정갑윤·안홍준·김병호·한선교·김태환·임인배·안택수·허태열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9. 1 김양수·김기현·권오을·이재오·이성권·안홍준·김정훈·김재경·나경원·정중복·원희룡·김희정·박승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5. 9. 15 김동철·노영민·양형일·김태홍·이상열·구논희·조경태·최인기·지병문·염동연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발의)**

(2005. 9. 20 이호웅 의원 외 144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5. 9. 21 이상열·이정일·한화갑·류근찬·한병도·우윤근·김효석·조승수·김동철·장영달·최철국·양형일·이낙연 의원 발의)

(이상 7건 대안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20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5. 10. 10 정부 제출)

**2005년도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5. 10. 13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 9. 30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안**

(2005. 10. 28 정부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11월 16일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보고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안**

(2005. 10. 28 정부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11월 16일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보고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안**

(2005. 10. 28 정부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11월 16일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이병석·김기현·곽성문·김재원·박순자·엄호성·고조홍·정희수·김우남·이상열·김성조·윤두환 의원 발의)

11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조선대학교 해직교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청원**

(2005. 10. 28 경기 하남시 춘궁동 406-1 권광식 외 67인으로부터 백원우 의원 외 15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단체수의계약물품의 품질향상비 일부 불인정(누락) 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2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 501호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용원으로부터 김교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4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청원**

(2005. 11. 2 인천 남구 주안1동 194-8(2층) 한국아파트연합회 상임공동대표 박인규 외 17만 7521인으로부터 김교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 복리·부대시설 지원을 위한 수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3 서울 강동구 명일2동 47-12 진로아파트 4층 강동구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회장 성충호 외 482인으로부터 김충환·이상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에 관한 청원**

(2005. 11.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대한석유협회 회장 고광진 외 3인으로부터 박병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3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쌍용아파트 102-1502 송재항으로부터 강기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피부미용 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2005. 11. 4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5 (사) 대한미용사회 회장 직무대행 박기동으로부터 박세환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0 경기 의왕시 내손동 624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엄태원 외 7인으로부터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3층 리츠자산관리회사 협의회 회장 김완호 외 7인으로부터 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영호 외 10인으로부터 김재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4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8 포항e병원 재단 이사장 장성호로부터 이상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료법인 영리화 허용 중단 등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윤준하 외 10인으로부터 현애자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4 충정타워 6층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 오재철 외 22인으로부터 안명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이석태 외 10인으로부터 전재희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최인순 외 10인으로부터 김재윤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5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8-21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최상림 외 10인으로부터 장복심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중구 소공동 117번지 8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이학영 외 10인으로부터 김재윤 의원 외 15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임대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이용득 외 10인으로부터 노회찬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금융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가 29 아두빌딩 4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문경식 외 10인으로부터 심상정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간이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9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정광훈 외 10인으로부터 심상정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남윤인



순 외 10인으로부터 이상민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보육료 자율화 반대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종로구 송인2동 313-2 형 제빌딩 2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이필두 외 10인으로부터 이경숙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에 관한 청원**

(2005. 11. 1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박상중 외 10인으로부터 정봉주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서면질문서 제출**

##### **동우대학의 원주이전에 관한 질문서**

(2005. 10. 28 이계진 의원 제출)

##### **국가영어평가시험 개발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05. 11. 3 심재철 의원 제출)

#####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관한 질문서**

(2005. 11. 14 유승민 의원 제출)

#### **○서면답변서 제출**

##### **대학 시간강사 경력인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 **파키스탄 지진피해 관련 정부구조단 미파견 문 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05. 10. 31 정부 제출)

##### **파키스탄 지진피해 관련 정부구조단 미파견 문 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5. 11. 1 정부 제출)

##### **문화관광부장관의 직무유기 등에 관한 질문서 에 대한 답변서**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